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10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이병도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봉양순 의원)

1. 제안이유

○ 노인과 장년층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므로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심의 사항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심의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삭제)

3. 참고사항

(1)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 장년층과 노인의 욕구와 정책 지원은 서로 상이하여 장년층에 대한 제9조제1항 각조의 기능정책 자문 또는 심의는 별도로 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21항제5호)**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0조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장년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음.

제30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여가·문화활동 등 맞춤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같이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개정안은 노인과 장년층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0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병도, 유 용, 이광호, 김상훈, 김용연, 권수정, 김제리, 김소영, 이호대, 김소양, 이영실, 오현정, 김동식, 김혜련, 봉양순, 서윤기, 이정인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노인과 장년층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므로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심의 사항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자문·심의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제5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